

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작성안내문

필요서류 : 1. 위임인 신분증 2. 위임인의 자필위임장 3. 대리인 신분증
 ※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지참 (복사본 및 사진 불가)

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(못오시는 분)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셔야 하며,
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인감증명서 발행령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0. 2. 18.> (알록)

[]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·한정후견인
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
 []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
 [] 세무서(세무서장) 확인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,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.
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.
 ※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,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
[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]

1 성명	2 서명 또는 날인	3 주민등록번호	-
위임자 4 국적	5 주소	6 신분증 종류	7 용도
8 발급통수	9 대리인 성명	10 주민등록번호	11 관 계
12 위임 사유	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		
12 년 월 일			

[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]

성명	주민등록번호	-
주소	발급통수	인감 또는 서명 혹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
관계		

- 성명 : 위임자의 성명
- 서명 또는 날인 :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(인감도장 아니라도 무방)
- 주민등록번호 : 주민등록번호 13자리 (뒷자리까지 전부)
- 국적 : 위임자의 국적 (ex: 대한민국 / 외국인의 경우: 위임자 국적)
- 주소 : 위임자의 주소 (동호수까지 기재)
- 신분증 종류 : 대리인이 지참하여 오실 위임자의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
 (ex :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/ 여권 등)
- 용도 :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기재
 (ex : 금융기관 제출용 / 법원제출용 / 부동산매도용 / 자동차매도용 등)
 ※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누어지며,
매도용의 경우 부동산매도용인지 자동차매도용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
- 발급통수 : 발급을 원하는 통수 기재 (몇장 필요하신지 기재)
 ※ 발급통수 미기재시 1통만 발급
- 대리인의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주소 기재 (1,3,5번 참고해서 작성)
- 관계 : 위임자를 기준으로 한 대리인의 관계 (부 / 모 / 자녀 / 직원 등)
- 위임사유 : 대리 발급을 하시는 사유를 기재 (ex : 직장출근 / 병원입원 / 거동불편 등)
- 날짜 :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날짜 기재
 ※ 위임장 유효기간은 6개월로, 위임장 작성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급불가

※ 위임자가 해외출국중이거나 수감중인 경우 혹은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에는 별도 문의